#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9일, 서왕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 11. 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왕진 의원)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제44조제3항,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2,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및 제10호의2 신설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1.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계획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추진 등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구조 전환 및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입주기업체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을 하며, 이러한 지원사업시 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안 제33조제7항제6호 및 제44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및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2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br>① ~ ⑥ (생 략)<br>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br>1. ~ 5. (생 략)<br><신 설><br><br><br><br><br>6. (생 략) |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br>① ~ ⑥ (현행과 같음)<br>⑦ ----------.<br>1. ~ 5. (현행과 같음)<br>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사항<br>7. (현행 제6호와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⑧ ~ ⑬ (생 략) | ⑧ ~ ⑬ (현행과 같음) |
|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 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사업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관련시설의 효율 개선 및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 | ④ ----------.---- |

| 현 행 | 개 정 안 |
|---|---|
|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br>1. ~ 6. 생 략)<br><신 설><br><br>7. ~ 9. (생 략)<br>⑤ ~ ⑫ (생 략) | ----------.<br>1. ~ 6. (현행과 같음)<br>6의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휴부지(遊休敷地) 등을 활용한 설비 확충 방안<br>7. ~ 9. (현행과 같음)<br>⑤ ~ ⑫ (현행과 같음) |

산업단지가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6%, 42.5%로 높게 나타는데[1],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CBAM) 등 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산업단지도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2]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사업을

1)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 | |
|---|---|---|
| 산업단지* | 업체수 | 94,454 개 |
| | 온실가스 배출량(A) | 287,828 천tCO2eq. |
| | 에너지 사용량(B) | 113,971 천toe |
|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량(C)** | | 676,648 천tCO2eq. |
| 산단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A/C) | | 42.5% |
| 국가 전체 에너지사용량(D)*** | | 234,667 천tCO2eq. |
| 산단 에너지사용량 비중(B/D) | | 48.6% |

* 2023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한국에너지공단, '24.7.)
** 2024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3.12.)
***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4.3.)

2)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구상」, 국토연구원, 2023. 11. 27., 국토이슈리포트 제80호

추진하며, 사업시행자가 노후 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 등을 포함하여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우선, 관리기본계획 내 에너지 구조 전환 등 포함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관리기관이 면적, 입주대상업종, 용도별 구역, 업종별 공장배치 및 지원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024년 2월에 개정된 「산업단지 관리지침」[3]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등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산업단지에서 영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등을 조사하여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3) [시행 2024. 2. 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9호, 2024. 2. 14.,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관리방향 마련(안 제7조의4 신설)
○ (현행)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나 관리기본계획에 그 근거가 부족하여 설치에 애로사항이 발생
* 산단공이 관리하는 32개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반영되어 있으나 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 등에는 다수 미반영
○ (개선)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리지침 개정 후 일반산단 등에 대해서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에 관련 근거 마련 독려 예정

[표 2] 관리기본계획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방안 포함 지침

| 「산업단지 관리지침」 |
| --- |
| 제7조의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지원) ③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전사업 영위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그 설비를 조사하여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때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4]은 이러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최근 지침 개정으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권고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향후 조성되는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 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구조전환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므로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다만 에너지 발전 및 송배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및 발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사업자의 업무 영역이므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관리기관이 에너지 공급 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관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표 2]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입주지원 지침 등**

| 「산업단지 관리지침」 |
|---|
| 제7조의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지원) ①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② 관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고,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계획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관리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개정안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 개선확충을 명시하고, 특히 재생에너지를 우선 보급하도록 하여 입주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보다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다만, 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고, 최근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예정법률[5][6]에 안 제44조제1항의 내용이 기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 등 포함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5조의2는 시·도지사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고(제2항), 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항).

그런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구조고도화계획에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태양광 발전설비는 산업기반시설(에너지시설)[7]에 포함되므로, 현행 법체계상 구조고도화사업계획

---

5)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6) 시행예정법률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7) 제2조(정의)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이 아닌 구조고도화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 3] 구조고도화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 포함사항 비교

| 구조고도화계획 | 구조고도화사업계획 |
|---|---|
|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br>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 전략<br>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br>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br>5.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br>5의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br>6. 기업·연구소·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br>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br>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br>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br>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br>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br>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br>7. 재원조달방안<br>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br>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만, 최근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예정법률[8]이 시·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에 “5의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내용으로 의결·공포되었으므로, 동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기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 2.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 확대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으로 안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 등을 추가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제10호의2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45조의21(사업) ①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
| 7. ~ 10. (생 략) | 7. ~ 10.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0의2.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등에 관한 사업 |
| 11.·12. (생 략) | 11.·12.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부터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촉진사업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저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개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9]하고,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6131-303) 사업(참고1 참조)으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내역사업인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장비와 ESS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산업단지[10]의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 제45조의21에 따른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만 포함하고 있음.

[표 2]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1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br>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

9) ('19년 지정) 창원, 반월시화, 인천남동, 구미 ('20년 지정) 대구성서, 광주첨단, 여수
('21년 지정) 울산미포, 군산, 명지녹산 ('22년 지정) 청주, 천안, 대불, 대전, 포항
('23년 지정) 광양, 주안부평, 신평장림 ('24년 지정) 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

10)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사업권한을 위임·위탁받을 수 있고, 현재 모든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권한을 위임받았으며, 그 외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은 관리권자(시·도지사 등)로부터 사업권한을 위탁받고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
|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br>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br>3의2.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br>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br>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br>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br>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br>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br>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br>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br>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조사ㆍ연구<br>10.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br>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br>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br>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br>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에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중 하나로 안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확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근거를 안정적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11)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그런데 최근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예정법률[12][13]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리대상인 산업단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촉진사업을 수행할 근거조문이 마련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포함하여 명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3월 시행예정인 기개정 법체계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확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안 제45조의21과 같이 개정할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12)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13) 시행예정법률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